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공공기관의 장이 ----- ----- ----- -----.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 ----- ----- -----.
1. (생략) 가. ~ 다. (생략) 라. 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u>도지사</u> 및 특별자치도지사 나. 특별시·광역시· <u>도</u>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신 설> <신 설>	2. ----- -----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나.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함) 제7장 벌칙 등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과 같다.
--	---

[별표 4] <신설 2013.0.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	
1) 지연보고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보고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60
3) 지연보고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90
4) 지연보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
5) 지연보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0
나.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	300
다.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	
1) 1차 위반		100
2) 2차 위반		200
3) 3차 이상 위반		300